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<br>(우정사업본부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4. 8. .               |

## 1. 의결주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·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(안 제4조의2)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·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

나.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(안 제4조의3)

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

다.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(안 제4조의4)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

라. 권한의 위임(안 제11조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,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

마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안 제12조)

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)

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 명칭, 보험금을 청구할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요양기관이 체신관서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전송하여야 한다.

1.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
2.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전송할 것

제4조의3(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)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

제4조의4(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13호의2, 제13호의3,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의2.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
- 13의3.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
17. 제4조의2제2항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요건의 고시
18. 제4조의3제3호,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4조의4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4조의2(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)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 명칭, 보험금을 청구할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요양기관이 체신관서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전송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</u></li> <li><u>2.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</u></li> </ol> |

<신 설>

<신 설>

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
제4조의3(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)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

제4조의4(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

제11조(권한의 위임) ① 과학기술  
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 
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  
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1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4. ~ 1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  
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  
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  
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 
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3의2. 법 45조의2제1항에 따른  
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 
고시

13의3.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  
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 
업무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  
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
의 고시

14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제4조의2제2항2호에 따른  
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  
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  
호조치 요건의 고시

18. 제4조의3제3호, 제4호에 따  
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 
의무 예외사유의 고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② (생 략)</p> <p>제1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4조의4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